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 10. 15 선고 2019가단5194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이종창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른하늘

담당변호사 김진성

변론 종결 2019. 9. 3.

판결 선고 2019. 10.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13. 접수 제471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및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1. 10. 9. C와 혼인신고를 마친 C의 배우자이고, 피고는 C와 D 사이에 태어난 C의 딸이다.

나. 원고는 2013. 2. 12. 소유자인 C으로부터 서산시 E 대 266㎡를 증여받아 2013. 2.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4. 6. 13. 피고에게 이를 증여하고 2014. 6. 16.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위 서산시 E 대 266㎡는 2014. 7. 28.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라. 피고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지상에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단독주택을 건축하여 2014. 12. 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판단

원고는 원고가 C로부터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피고가 원고와 C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한 부담부증여였는데, 피고가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9호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음향과 영상만으로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증여가 부양의무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부담부증여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철거하고 그 대지인 같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전부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안동철

별지